

5.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214호 1999. 10. 19

개정이유

건설기계관리법의 개정(1999. 1. 29, 법률 제5728호 및 1999. 2. 8, 법률 제5905호)으로 건설기계사업의 범위에 건설기계폐기업이 추가되고, 무단 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기계의 형식승인신청시의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모법에서 건설기계의 경미한 정비는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의 사용자가 스스로 이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정비에 필요한 시설 및 작업의 범위 등을 정함(제1조의2 및 별표 10의2 신설, 제41조)
- 나.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절차 및 시설기준 등을 정하고, 폐기대상 건설기계의 장치 등을 정함(제1조의3·제65조의2·제65조의3 및 별표 16의2 신설).
- 다. 건설기계의 형식승인신청 및 형식신고시에 제출하는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형식승인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함(제44조·제44조의2 및 제46조).

- 라. 모법에서 매매용건설기계를 전시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신고절차를 정하고, 전시된 건설기계를 운행할 수 있는 경우를 시험운행·정기검사 등을 위한 경우로 정함(제68조의3 신설 및 제70조).
- 마. 모법에서 시·도지사는 무단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강제처리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제91조, 제91조의2 내지 제91조의4 신설).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1조의2 및 제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오일의 보충

2. 에어클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전구의 교환

4. 타이어의 점검·정비 및 트랙의 장력 조정

5. 창유리의 교환

제1조의3(건설기계의 폐기)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의 장치”라 함은 제32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제동장치·조향장치 및 조종장치를 말한다.

제7조제1항중 “영 제5조제1항”을 “영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서류는 별지 제8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양도증명서에 의할 수 있다”를 “서류 또는 영 제5조의2제1항의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며,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건설기계를 직접 거래한 경우 :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양도증명서

2.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양도증명서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

항제4호중 “수출등”을 “수출·폐기 등”으로 한다.

2. 건설기계검사증

제1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그 열람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열람신청서에 당해 건설기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중 “법 제8조제1항”을 각각 “법 제8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중 “법 제8조제2항”을 “법 제8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시설”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등록번호표봉인자지정사항의 변경신고) 등록번호표봉인자는 법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번호표봉인자지정변경신고서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가 광산 구내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관하여 광산보안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를 받은 사실을 건설기계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유효기간동안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24조제1항 본문중 “정비”를 “도난, 사고 발생, 압류, 1월 이상에 걸친 정비, 사업의 휴지”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3월이내”를 “6월 이내”로, “반출기간이내를 말한다”를 “반출기간 이내, 압류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압류기간 이내, 당해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을 휴지하는 경우에는 그 휴지기간 이내”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4호 내지 제6호로 하며, 동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4호(종전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5호(종전의 제3호)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을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 또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으로 하고, 동항제6호(종전의 제4호)중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건설기계제작자”를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자”로

자”로 하며, 동조제2항중 “건설기계검사(운행상황기록)증”을 “건설기계검사증”으로 한다.

1. 변경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2. 변경전·후의 건설기계의 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변경한 부분의 도면
4. 건설기계검사증 사본

제26조제2항중 “건설기계검사(운행상황기록)증”을 각각 “건설기계검사증”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건설기계검사증등)”을 “(건설기계검사증)”으로 하고, 동조중 “건설기계검사(운행상황기록)증”을 “건설기계검사증”으로 한다.

제32조의2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제2호중 “시설”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한다.

제35조중 “건설기계검사(운행상황기록)증”을 각각 “건설기계검사증”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중 “정비”를 “도난, 사고발생, 압류, 1월 이상에 걸친 정비, 사업의 휴지”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2월이내”를 “3월 이내”로, “반출기간이내를 말한다”를 “반출기간 이내, 압류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압류기간 이내, 당해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을 휴지하는 경우에는 그 휴지기간 이내”로 하며,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정비작업의 범위)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스스로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2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

제44조 내지 제4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신청) 법 제18조제2항 본문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건설기계형식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2. 건설기계의 외관도
3. 변경 전·후의 제원대비표(변경승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한다). 이 경우 동 서류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외국정부가 공인하는 시험기관(이하 “외국시험기관”이라 한다) 또는 당해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

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도로이동시의 분해 · 운송방법(도로법
시행령 제28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한다.)

6.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 또는 조
립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기 위하여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
과 기술인력의 확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 · 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에 한한다]

제44조의2(건설기계형식의 신고) 법 제18
조제2항 단서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형식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
식의 건설기계형식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2. 건설기계의 외판도
3. 변경 전 · 후의 제원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4.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제원표
의 기재내용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한다). 이 경
우 동 서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외
국시험기관 또는 당해 건설기계의 제
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
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도로이동시의 분해 · 운송방법(도로법
시행령 제28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한다)

6.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 또는 조
립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기 위하여 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
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등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
다)

제4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8조제
3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운전실 내 · 외의 형태(건설기계의 길

이 · 너비 또는 높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타이어의 규격(성능이 같거나 향상되는 경우에 한한다)

3. 부품(건설기계의 성능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6조(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

이미 형식승인을 얻거나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동일형식건설기계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2. 선적서류 사본

3. 신용장 사본

4.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초로 동일형식의 건설기계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7조(건설기계의 형식승인의 통지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44조 · 제44조의2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신청, 형식신고 또는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를 한 건설기계의 구조 · 규격 및 성능 등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식을 승인하거나 형식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하거나 형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청인 및 시 · 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48조 내지 제5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8조제1항중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을 “2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로 한다.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 등) ①
영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폐기업신고서는 별지 제32호의2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건설기계폐기업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 · 여권 · 국가기술자격수첩 ·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제시로 이

에 갈음할 수 있다.

2. 건설기계폐기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건설기계폐기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제6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폐기기업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5조의3(건설기계폐기기업의 신고기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폐기기업의 신고기준은 별표 16의2와 같다.

제66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설기계의 보유대수(보유대수의 변경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68조의2 및 제6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건설기계의 보관·관리비용 등)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자가 건설기계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관·관리비용은 정비완료사실을 건설기계소유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5일 이 경과하여도 당해 건설기계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설기계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으로 한

다. 다만, 그 금액은 당해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비완료 사실을 통보한 날부터 5일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징수 할 수 없다.

제68조의3(매매용건설기계의 운행허용)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용 건설기계를 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2킬로미터 이내의 거리를 시험운행하고자 하는 경우(타이어식 중고건설기계에 한한다)
2. 정기검사·정기점검 또는 정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
3. 사업장의 이전에 따라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제69조제1항 “법 제25조”를 “법 제25조 제2항”으로, “당해 건설기계가 30일이내에 정기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점검기록부로써, 30일이내에 정기점검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매매협회 또는 건설기계정비업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34호서식의”를 “별지 제34호서식의”로 한다.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매매용 건설기계의 제시신고 등)

- ①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고건설기계의 제시 또는 매도의 신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사업장에의 제시신고 : 별지 제34호의 2서식의 매매용건설기계제시신고서
 - 매도신고 : 별지 34호의3서식의 건설 기계매도신고서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그 제시 또는 매도를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시신고서 또는 매도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양도증명서 사본(매도된 경우에 한한다)
 -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비치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74조제1항제2호중 “고등학교·기술학교”를 “고등학교”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제7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한다.
 -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언

어분별력이 80퍼센트 이상일 것

제84조제1항중 “건설기계정비협회 및 건설기계매매협회”를 “건설기계정비협회·건설기계매매협회 및 건설기계폐기협회”로 한다.

제85조제1항중 “건설기계매매협회의 회원이 된다”를 “건설기계매매협회, 건설기계폐기업신고를 한 자는 건설기계폐기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로 한다.

제86조 및 제8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0조의2중 “법 제33조”를 “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9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전·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처리명령서에 의한다.
-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함에 있어서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매각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예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 일반경쟁입찰에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③시 · 도지사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각예정일 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매각할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및 주요

제원

2. 매각장소 및 매각일시

④시 ·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매각한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2. 매각일시
3. 매각과정
4. 매수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제91조의2 내지 제9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건설기계의 폐기요청 등) ①건설기계소유자가 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폐기업자에게 건설기계의 폐기요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44호의3서식의 건설기계폐기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계폐기업자에게 제출하고, 폐기대상 건설기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등록증
2.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폐기요청일전 3일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한다). 다만, 건설기계폐기업자가 저당 · 압류 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3. 건설기계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이 경우 건설기계소유자가 직접 폐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 여권 ·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4. 저당권 또는 압류의 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저당권설정등록 또는 압류된 건설기계에 한한다)

②건설기계폐기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요청을 받은 경우 폐기대상인 건설기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된 때. 다만, 이해관계인이 저당권 또는 압류의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등록사항이 건설기계등록원부의 기재 내용과 다른 때

제91조의3(폐기인수증명서 등) ①건설기계폐기업자는 제9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폐기요청을 받은 때

에는 폐기대상 건설기계를 인수한 후 폐기요청을 한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별지 제44호의4서식의 폐기대상건설기계인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건설기계폐기업자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관계서류를 연도별로 작성·비치하고 이를 3년간(제2호의 경우에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4호의3서식의 건설기계폐기 요청서(제91조의2제1항 각호의 첨부서류 사본을 포함한다)
2. 별지 제44호의5서식의 폐기인주증명서식수불대장
3. 별지 제44호의6서식의 폐기인수증명서 발급대장
4. 별지 제44호의7서식의 말소등록신청 대행대장
5. 별지 제44호의8서식의 폐기검수표

제91조의4(건설기계의 폐기비용 등) ①법 제34조의3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평가액은 폐기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자체중량에서 폐기물 중량을 뺀 중량에 해당하는 고철가격으로 하고,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폐기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자체중량에 공인연구기관에서 제시한 1킬로그램당 폐기처리비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건설기계폐기업자는 법 제34조의3제3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폐기소요비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를 요청한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건설기계폐기업자는 폐기의뢰된 건설기계의 견인·수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폐기를 요청한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별표 2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재질 : 철판 또는 알루미늄판. 다만, 제7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알루미늄판

별표 6 제2호가목의 8. 빙차의 무게의 기준란중 “휴대공구”를 “휴대공구 및 예비타이어(예비타이어를 장착하는 건설기계에 한한다)”로, “예비타이어와 승차인원”을 “승차인원”으로 한다.

별표 6 제3호나목의 4. 제동장치의 기준란의 ①중 “타이어식 건설기계”를 “타이어식 건설기계(로울러를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6 제3나목의 6. 주행장치 가. 타이어식의 기준란의 ②를 삭제한다.

별표 6 제3호나목의 8. 조종장치 가. 조종실의 기준란의 ① 내지 ⑦을 각각 ② 내지 ⑧로 하고, 동란에 ①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란의 ⑤(종전의 ④)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하거나 조종실은 쉽게 탈출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로 한다.

①조종석이 있는 건설기계에는 캡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여건상 캡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6 제3호나목의 8. 조종장치 마. 창문의 기준란의 ③중 “타이어식건설기계”를 “제7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로 한다.

별표 6 제3호나목의 8. 조종장치 바. 각종 표지판의 기준란의 ①중 “기중기등”을 “기중기 등 선회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 한다.

별표 6 제3호나목의 10. 기타의 기준란의 ④중 “하향 또는 좌향”을 “좌향”으로, 동란의 ⑧중 “운행기록계를”을 “운행기록계 · 속도표시장치 및 속도제한장치 중 1개 이상을”로, “사용하여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하며, 속도표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50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6 제4호바목의 기준란의 ②중 “소음이 없어야 한다”를 “소음이 없어야 하며, 적재함이 상승된 상태에서는 경고등 또는 경고음이 작동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란의 ⑤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⑤소형자동차 등이 차체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축면보호대 및 후부안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포장작업 등 특수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후부안전판은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8 제1호가목중 “건설기계검사(운행상황기록)증”을 “건설기계검사증”으로 하고, 동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구조변경내용이 별표 6의 규정에 의 한 건설기계의 구조 · 규격 및 성능 등의 기준과 건설기계 검사기준에 적합하고, 임의로 구조를 개조한 부분이 없을 것

별표 8 제2호가목중 “건설기계검사(운행상황기록)증”을 “건설기계검사증”으로 한다.

별표 8 제3호차목(3)(나)중 “기중기등”을 “기중기 등 선회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 하고, 동목(4)중 “운행기록계”를 각각 “속도표시장치 · 속도제한장치 및 운행기록계”로 한다.

별표 8 제4호가목(1)중 “기름의 누출이 없을 것”을 “기름의 누출이 없어야 하며, 적재함이 상승된 상태에서는 경고등 또는 경고음이 작동할 것”으로 하고, 동목(5)중 “건설기계검사(운행상황기록)증”을 “건설기계검사증”으로 한다.

별표 8 제5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사리채취기 및 준설선

(1) 컨베이어의 버킷 등은 균열 · 마모

및 심한 손상이나 변형이 없어야 하고,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2) 준설펌프의 설치상태 및 흡입·배출 파이프의 연결상태가 견고하여 준설물의 누출이 없을 것

(3) 래더 및 커터는 설치상태가 견고하고, 균열·마모 및 심한 손상이나 변형이 없어야 하며,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4) 로프는 감김 및 풀림작용이 원활하여야 하고, 그레브 또는 해머의 낙하충격이 선체에 미치지 아니할 것

(5) 승선인원에 합당한 구난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별표 8 제6호를 삭제하고, 동표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별표 8 제6호(종전의 제7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사리채취기 및 준설선은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준설선의 검사기준에 따라 선박검사대행기관의 안전도검사가 되어 있을 것

별표 10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의 주란의 제1호 단서중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형

식승인”으로 하고, 동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를 제작·조립하는 자는 검사기계중 제10호 및 제13호의 검사기계를, 휘발유 또는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거나 전동기 또는 전기를 사용하는 건설기계를 제작·조립하는 자는 제4호의 검사기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3의 비교란중 “사후관리하는 때에는”을 “사후관리하는 때 또는 별표 11의 건설기계제작·조립자의 검사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때에는”으로 한다.

별표 14, 별표 15 및 별표 1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7중 “

대여
정비
매매

” “

대여
정비
매매

”를 “

대여
정비
폐기

”로 한다.

별표 21중 굴삭기의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란중 “굴삭기”를 “굴삭기, 무한궤도식 천공기(압축공기로 이동하는 천공기를 제외한다)”로 하고, 공기압축기의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란중 “천공기(트럭식천공기 를 제외한다)”를 “무한궤도식천공기(압축공기로 이동하는 것에 한한다)”로 하며, 동표

의 비고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한궤도식천공기(암축공기로 이동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굴삭기의 몸체에 천공장치를 부착하여 제작한 천공기를 말한다.

별표 22 제5호다목의 위반사항 중 “도시가스사업법 제48조”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로 하고, 동표 제12호의 위반사항 중 “제91조”를 “제80조”로 한다.

별표 23의 제6호란·제8호란 및 제9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건설기계검사(제

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소에서 검사를 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재검사수수료를 면제한다)

가. 신규등록검사

(1) 최초등록 1량에 대하여 100,000원

(2) 재등록 1량에 대형 25,000원

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1량에 대형 25,000원

다. 구조변경검사 1량에 대형 50,000원

8. 건설기계의 형신승인 신청 또는 형식신고

9. 건설기계의 확

인검사 신청

가. 최초형식 확 1량에 대하여 159,000원

인검사 (출장 검사시 282,000원)

나. 변경형식 확 1량에 대하여 113,000원

인검사 (출장 검사시 190,000원)

별표 2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중 “⑤사용본거지 또는 소속대여회사명”을 “⑤사용본거지(영업용의 경우에는 상호 및 사용본거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면 중 ⑧운행상황신고란을 삭제하고, 동서식 앞면 중 “⑨”를 “⑧”로 하며, 동서식 앞면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비서류

건설기계 등록·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합니다)

별지 제8호서식 앞면 중 “시장”
도지사 를
“특별시장”

광역시장로 하고, 동서식 앞면의 구
도지사

비서류란의 제3호 중 “건설기계검사(운행상황기록)증”을 “건설기계검사증”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내지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중 “⑩ 사용본거지 또는 소속 대여회사명”을 “⑩ 사용본거지 (영업용인 경우에는 상호 및 사용본거지)”로, “시 장” 를 “특별시장” 도지사 를 광역시장 도지사로 하고, 동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란의 제4호중 “수출등”을 “수출 · 폐기 등”으로 한다.

2. 건설기계검사증

별지 제14호서식 1면의 ⑬란중 “소속대여 회사명”을 “대여회사명”으로 하고, 동면의 ⑭란중 “소속대여회사주소”를 “대여회사 주소”로 하며, 동서식 4면의 주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의사항 : ⑯구분란에는 신규등록검사는 “신규”, 정기검사는 “정기”, 수 시검사는 “수시”, 구조변경검사는 “구조”, 정기점검은 “점검”으 로 기재합니다.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면중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제2항”을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 제1항”으로, “시장” 를 “특별시장” 지사 를 광역시장 도지사로 하고, 도지사

동서식 앞면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비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 여권 · 국가 기술자격수첩 ·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지정신청시에 한 합니다) 1부

2.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시에 한합니다) 1부

3.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변경신고시에 한합니다.) 1부

별지 제18호서식중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 2제1항”으로, “시장” 를 “특별시장” 지사 를 광역시장 도지사로 하고, 동서식

의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의사항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면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비서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⑧신고종별 일반 개별

⑩ 주기장의 규모

		“□ 대 여”	“□ 대 여업”
	를	□ 정비업	으로 하고, 동서식 앞면 중
		□ 매매업	
		□ 폐기업	
“시장”	를	“특별시장”	로 한다.
지사		광역시장	
		도지사	

별지 제3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4호의2서식 및 별지 제34호의3서식
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앞면의 발급일자란 및 동
서식 뒷면의 발급일자란의 “19 . . . ”

을 각각 “ . . . ”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뒷면의 주의란 제2호중
“신체검사서”를 “신체검사서(또는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4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44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앞면중 “사진”을 “사진”
(2.5×3.0cm)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으로, 시 장 를 특 별 시 장
도 지 사 광 역 시 장
도 지 사

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앞면,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앞면, 별지 제40호서식 앞면, 별지 제43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44호서식 중

“시장” 지사 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 지사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다만, 별표 6, 별표 8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기계 형식승인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건설기계의 형식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이 신청된 날부터 적용한다.

③(등록건설기계 등의 구조·규격 및 성능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법 제6조 제1항제3호·제5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여 등록말소를 한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건설기계와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구조·규격 및 성능기준을 적용함

에 있어서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0의 2]

정비작업의 범위(제41조관련)

1. 정비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의 정비작업의 범위

가. 원동기

- (1)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 (2) 연료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 (3) 머플러의 교환

나. 전동장치

- (1) 오일의 보충
- (2) 액셀레이터 케이블의 교환

다. 조향장치

- (1) 오일의 보충 및 구리스의 급유
- (2) 부트의 교환

라. 제동장치

- (1) 오일의 보충
- (2) 브레이크 호스·폐달 및 레버의 점검·정비

마. 주행장치

트랙링크 · 로울러 및 스프라켓의 교환

바. 완충장치

속업쇼바의 교환. 다만, 다른 장치와 분리되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사. 유압장치

누유수리를 위한 호스 등의 교환 및 점검 · 정비

아. 차체 및 작업장치 등

(1) 판금 또는 가공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차체 및 작업장치의 보수 및 교환

(2) 정비부분의 도색(분사방법에 의한 도색을 제외한다)

자. 기타

(1) 조종석내 설비의 점검 · 정비

(2) 새시 각부의 금유

2. 용접기 및 폐유수거시설을 갖춘 경우의 정비작업의 범위

가. 원동기

(1)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활장치의 점검 · 정비

(2) 연료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 · 정비

(3) 머플러의 교환

나. 전동장치

(1) 오일의 보충 및 교환

(2) 액셀레이터 케이블의 교환

다. 조향장치

(1) 오일의 보충 및 교환, 구리스의 금유

(2) 부트의 교환

라. 제동장치

(1) 오일의 보충 및 교환

(2) 브레이크 호스 · 페달 및 레버의 점검 · 정비

마. 주행장치

트랙링크 · 로울러 및 스프라켓의 교환

바. 완충장치

속업쇼바의 교환. 다만, 다른 장치와 분리되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사. 유압장치

누유수리를 위한 호스 등의 교환 및 점검 · 정비

아. 차체 및 작업장치 등

(1) 판금 또는 가공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차체 및 작업장치의 보수 및 교환

(2) 정비부분의 도색(분사방법에 의한 도색을 제외한다)

(3) 차체 및 작업장치에 대한 부분용접

(가) 불도우저 · 굴삭기 · 로우더 및 모터그레이더의 배토판 · 벼켓 · 장샵날 및 귀샵날 등의 부분용접

(나) 덤프트럭의 적재물 누출방지를 위한 적재함의 부분용접

(다) 기중기 · 천공기 · 항타 및 항발기의 오가비트 및 오가(스크류)의 부분용접

(라)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측면보호대, 흙받이 철판(훼나) 및 후부안전판의 보수를 위한 용접

(마) 배기관 파이프 및 소음기 보수를 위한 부분용접

(바) 탈부착이 가능한 운전석의 부분용접

(사) 발판 등 경미한 부위의 부분용접

자. 기타

(1) 조종석내 설비의 점검 · 정비

(2) 새시 각부의 금유

[별표 14]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기준(제59조관련)

구 분	일 반	개 별
1. 건설기계대수	5대 이상(2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대 이하
2. 사무실	수입금의 관리, 건설기계의 건설현장 배치관리 등 대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없음
3. 주기장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기장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 할 것 $24m^2 \times (\text{건설기계대수})^{0.815}$	

- 비고 : 1. 사무실과 주기장은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안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 · 광역시 및 시의 경우에는 사무실이 위치한 특별시 · 광역시 및 시에 연접한 광역시 · 시 · 군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다.
2.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농지법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지역이어야 하며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건축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기장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3. 주기장은 바닥이 평坦하여 건설기계를 주기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진입로는 건설기계 및 수송용 트레일러의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4. 주기장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4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주기장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1대를 2분의 1대로 하여 주기장면적을 산출한다.

[별표 15]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기준(제61조관련)

구 분	명 칭	제 원 동	종 별 내 역			
			종 합	부 分	전 문	
					원동기	유 압
대지 및 건물	1. 옥내작업장 면적	사무실, 작업장, 공작실, 부속창고등	10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이상	495제곱미터 이상	230제곱미터 이상
	2. 옥외작업장 면적	작업장, 주기장 등	1460제곱미터 이상	670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이상	430제곱미터 이상
부대 시설	1. 체인블록 또는 호이스트크레인		5톤 이상	2톤 이상	2톤 이상	1톤 이상
	2. 트럭 (이동정비용)	1톤 이상	○	○	○	○
	3. 폐유처리시설	유수분리장치포함	○	○	○	○
	4. 검차대		○	○		
정비 기계류	1. 트랙(링크)·프레스(임팩트렌치를 포함한다)	150톤 이상	○			
	2. 트랙링크자동용접기		○			
	3. 롤러아이들리프레스	100톤 이상	○			
	4. 롤러아이들리자동용접기		○			
	5. 롤러아이들리연마기		○			

구 분	명 칭	제 원 동	종 별 내 역			
			종 합	부 分	전 문	
					원동기	유 압
	6. 유압재 7. 전기용접기 8. 선반 9. 공기압축기 10. 부품세척기 11. 실린더보링 머신 12. 라인보링 머신	이동식 10톤 이상 10KVA 이상 1천 200mm 이상 7kg/cm ² 이상	○ ○ ○ ○ ○ ○ ○ ○	○ ○ ○ ○ ○ ○ ○ ○		
검사 시험기	1. 전조등시험기 2. 유압계 3. 압축시험기 4. 제동시험기 5. 분사펄프 시험기 6. 노즐시험기 7. 정반 8. 매연농도 측정기 9. 속도계시험기 10. 사이드슬립 측정기 11. 조속기 봉인기	15톤 이상 0~100% 측정용 15톤 이상 120km/h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명 칭	제 원 동	종 별 내 역			
			종 합	부 分	전 문	
					원동기	유 압
공구	1. 벨브시트커터 2. 벨브가이드 리퍼 3. 토크렌치		○ ○ ○	○	○ ○ ○	○
기술자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		1인 이상 2인 이상	2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비고 : 1.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 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등록기준과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소속 기술인력중 자동차정비기술자격과 건설기계정비기술자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정비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트럭에는 정비업체명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옥내작업장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야 한다.
4. 영 별표 2에 의한 부분건설기계정비업 신고를 한 자가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대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대지 및 건물기준과 정비기계류중 1. 틀랙(링크)·프레스(임팩트렌치를 포함한다) 내지 5. 를러아이들러연마기를 제외한다.
5. 기술자중 건설기계산업기사는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업체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16]

건설기계매업의 신고기준(제63조관련)

구 분	기 준	비 고
주기장(대지)	165제곱미터 이상	바닥이 평탄하여 건설기계를 주기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사무실	16제곱미터 이상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1천만원 이상	하자보증금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에 의한다.

- 비고 : 1. 사무실과 주기장은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안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 · 광역시 및 시의 경우에는 사무실이 위치한 특별시 · 광역시 및 시에 연접한 광역시 · 시 · 군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다.
2.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농지법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지역이어야 하며,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건축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기장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3. 주기장은 2이상의 건설기계매업자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1업자가 초과될 때마다 85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별표 16의2]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기준(제65조의3관련)

구 分	기 준
대지(작업장 · 야적장 · 사무실 등의 총면적을 말한다)	2,500m ² 이상
장 비	구난차(견인능력 5톤 이상) 또는 견인형 및 피견인형 특수자동차(20톤 이상)
	1대 이상
	지게차(인양능력 5톤 이상) 또는 집게차
중량기(계량능력 20톤 이상)	1식 이상

- 비고 : 1.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유 · 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동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2. 자동차폐차사업자가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 시설기준과 건설기계폐기업 시설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24]

과태료처분의 기준(제94조관련)

위 반 내 용	과태료금액
1.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가. 등록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인 때 나.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시마다	10만원 1만원
2.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	20만원
3.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때 가. 허위로 신고한 때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1)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시마다	20만원 2만원 1만원
4.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20만원
5. 법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 때 가.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 때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1)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시마다	40만원 3만원 1만원
6. 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 가. 반납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인 때 나.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시마다	3만원 1만원

위 반 내 용	과태료금액
7.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가.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나.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시마다	2만원 1만원
8.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기계검사증을 당해 건설기계에 비치하지 아니한 때	10만원
9.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때 가. 정기점검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나.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1만원
10.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정비한 때	50만원
11. 법 제18조제2항 단서 ·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0만원
1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 때 가. 허위로 신고한 때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1)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시마다	40만원 3만원 1만원
13.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때 가. 허위로 신고한 때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1)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시마다	40만원 3만원 1만원
14.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때	

위 반 내 용	과태료금액
가. 허위로 신고한 때	10만원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1)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1만원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6일 초과시마다	1만원
15.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때	20만원
16. 법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기계로 화물을 운송한 때	30만원
17.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주기한 때	5만원

비고 : 1. 제1호나목 · 제3호나목(2) · 제5호나목(2) · 제6호나목 · 제7호나목 · 제9호나목 · 제12호나목(2) · 제13호나목(2) 및 제14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최고금액은 다음과 같다.

가. 제1호나목의 경우 : 50만원

나. 제3호나목(2)의 경우 : 20만원

다. 제5호나목(2) · 제6호나목 · 제12호나목(2) 및 제13호나목(2)의 경우 : 40만원

라. 제7호나목 및 제9호나목의 경우 : 30만원

마. 제14호나목(2)의 경우; 10만원

2. 제3호 · 제7호 및 제9호의 과태료는 위반건설기계 대수마다 부과하되, 과태료의 합산한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과태료의 금액을 50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건설기계		<input type="checkbox"/> 등록증 <input type="checkbox"/> 검사증		
등록사항	건설기계의 표시			
	① 건설기계명		② 등록번호	
	③ 형식		④ 규격	
	⑤ 원동기명 및 형식		⑥ 차대일련번호	
	⑦ 사용본거지(영업 용의 경우에는 상호 및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표시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주소				
주요 제원	⑪ 길이	mm	⑫ 너비	mm
	⑬ 높이	mm	⑭ 총중량	kg
	⑮ 정격출력	PS/RPM	⑯ 주행방식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검사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인) 도지사				
유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기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등록말소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위반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정기적으로 검사 또는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위반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본증은 건설기계에 항상 비치하여야 합니다(위반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30300-10611일

1999. 8. 11 개정승인

210mm × 297mm

인쇄용지(특급) 120g/m²

(뒤쪽)

건설기계검사·점검란

⑯일련 번호	⑰구분	⑲검사 (점검)일자	⑳유효 일자	㉑처리관	㉒담당자 성명	㉓비고
1			. . . 까지			
2			. . . 까지			
3			. . . 까지			
4			. . . 까지			
5			. . . 까지			
6			. . . 까지			
7			. . . 까지			
8			. . . 까지			
9			. . . 까지			
10			. . . 까지			

변경사항란

㉔일련 번호	㉕변경 일자	㉖변경사항		㉗처리관	㉘담당자 성명	㉙비고
1						
2						
3						
4						

* 주의사항 : ⑰ 구분란에는 신규등록검사는 “신규”, 정기검사는 “정기”, 수시검사는 “수시”, 구조변경검사는 “구조”, 정기점검은 “점검”으로 기재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건설기계제원표

① 형식승인(신고)자			
② 건설기계명		③ 제작회사(제작국)	
④ 형식		⑤ 규격	
⑥ 자체중량	kg	축거	제1축기 mm 제2축기 mm
⑦ 최고속도	km/hr	윤거	전륜 mm 후륜 mm
⑧ 등판능력	(무부하)	타이어	전륜 mm 후륜 mm
⑨ 외관 최저지상고	길이	치수	최소회전반경 mm
	너비		
	높이		
	형식		제동거리 m/km/hr (부하, 무부하)
	출력(정격출력)	출력 ps/rpm(정격출력)	슈폭 mm
⑩ 엔진	최대토오크	kg · m/rpm	트랙중심간거리 mm
	기통수	기통	팀블러중심간거리 mm
	연료종류		트랙높이 mm
	제작회사		접지압 kg/m ²
⑬ 작업장치	(기종별로 표시)		
⑭ 비고			
⑮ 형식승인 연월일		⑯ 형식승인 번호	

30300-10611일

1999. 8. 11 개정승인

210mm × 297mm

인쇄용지(특급) 120g/m²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년	월
수 신						일	
제 목	건설기계 등록현황				발신		(인)
기종별 구분	①총계	②관용	③ 자가용	④ 영업용	증가		감소
					⑤ 신규	⑥ 전입	⑦ 말소
1. 블도우저							
2. 굴삭기							
.							
.							
.							
.							
.							
.							
26. 특수건설기계							
계							

30300-10811일

210mm × 297mm

1999. 8. 11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쪽)

건설기계등록원부		<input type="checkbox"/> 등본 <input type="checkbox"/> 발급 <input type="checkbox"/> 초본 <input type="checkbox"/> 열람	신청서
전 설 기 계	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소 유 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신청 내용	발 급	() 부	
	열 람	() 부	
용 도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		<input type="checkbox"/> 등본 <input type="checkbox"/> 발급 <input type="checkbox"/> 초본 <input type="checkbox"/> 열람	
신청인 주 성 주민등록번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건설기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0300-33111일

1999. 8. 11 개정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20호 서식]

(앞쪽)

30300-331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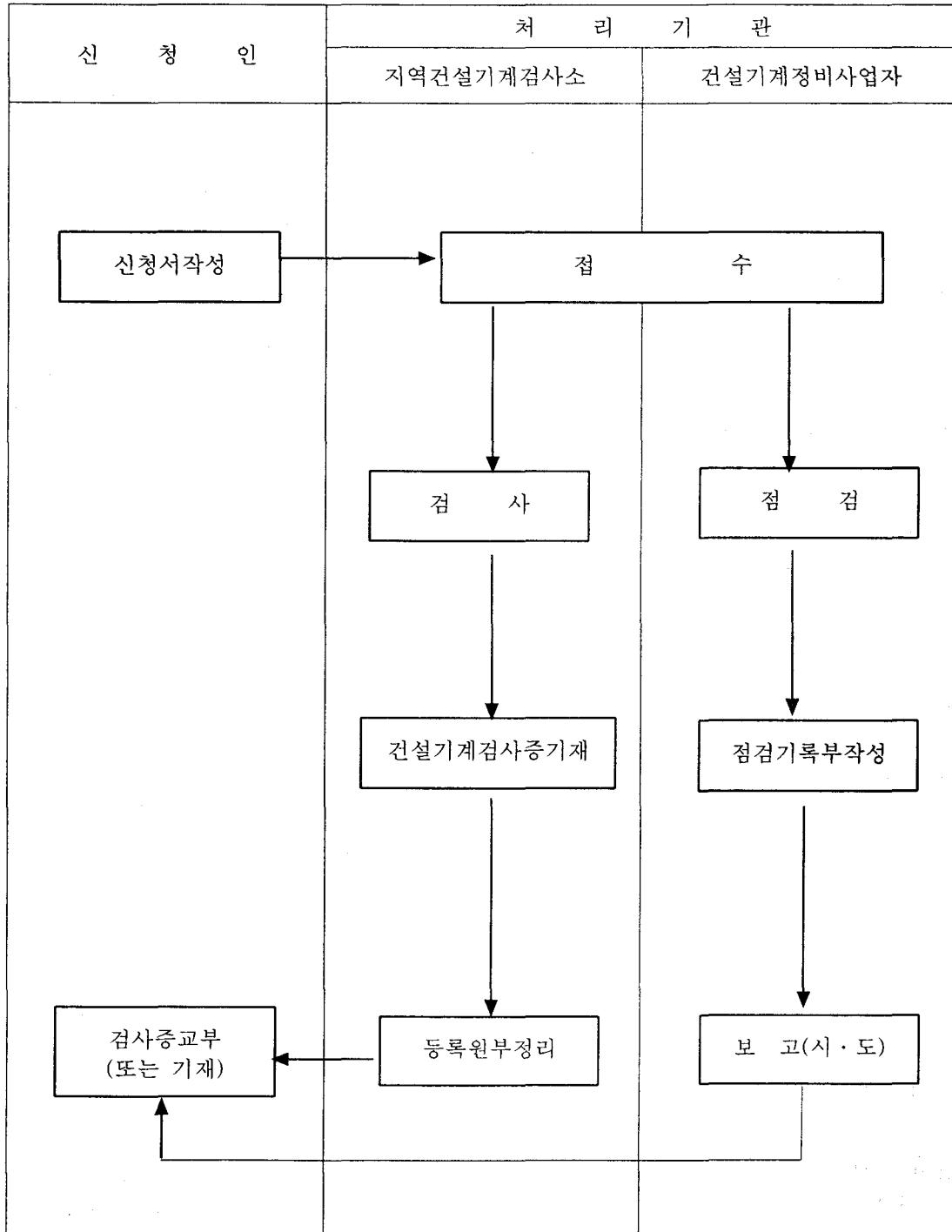
210mm × 297mm

1999. 8. 11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m²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input type="checkbox"/> 건설기계형식승인(변경승인)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건설기계형식신고(변경신고)서 <input type="checkbox"/>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서			처리기간
			승인 : 15일 (변경승인) 신고 : 10일 (변경신고) 동일형식, 수입신고 : 7일
신청 (신고) 인	① 성명 (법인인 경우 에는 상호 및 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④ 건설기계명		⑤ 규격	
⑥ 건설기계형식			
⑦ 원동기형식			
⑧ 제작사명(제작국)	()		
변경승인신청(신고) 의 경우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뒤쪽 참조			20,000원

30300-33111일

210mm × 297mm

1999. 8. 11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m²

(뒤쪽)

구비서류

1. 형식승인(변경승인) 신청

- 가.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 나. 건설기계의 외관도
- 다. 변경 전·후의 세원대비표(변경승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 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합니다.) 이 경우 동 서류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기술연구원"이라 합니다). 외국정부가 공인하는 시험기관(이하 "외국시험기관"이라 합니다.) 또는 당해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 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마. 도로이동시의 분해·운송방법(도로법시행령 제28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합니다)
- 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 또는 조립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기 위하여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사.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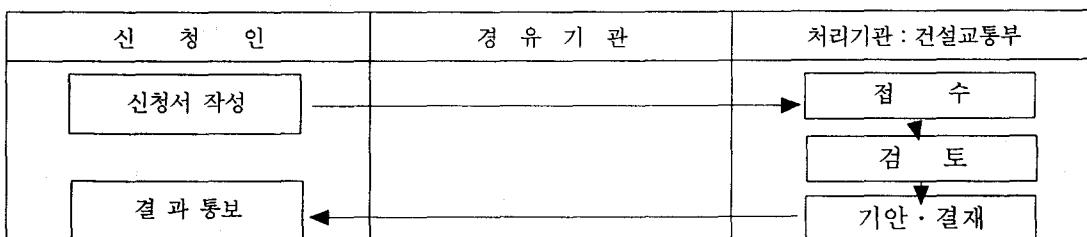
2. 형식신고(변경신고)

- 가.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 나. 건설기계의 외관도
- 다. 변경 전·후의 세원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 라. 가목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제원표의 기제내용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합니다.) 이 경우 동 서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외국시험기관 또는 당해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마. 도로이동시의 분해·운송방법(도로법시행령 제28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합니다.)
- 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 또는 조립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기 위하여 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사.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

- 가.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 나. 선적서류 사본
- 다. 신용장 사본
- 라.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30300-15211 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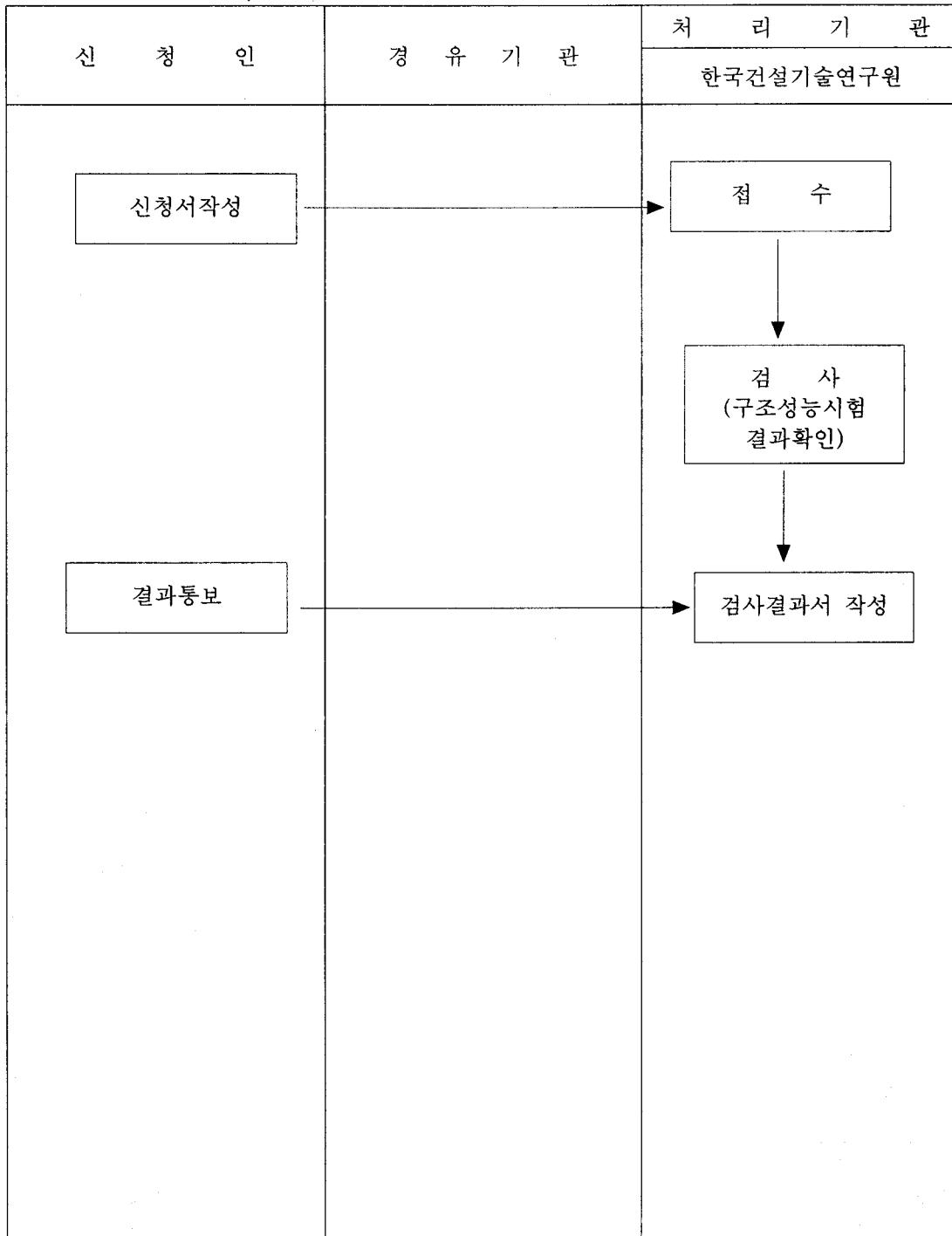
1999. 8. 11 개정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32호의2서식]

(앞쪽)

건설기계폐기물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인 경우 에는 상호 및 대표자)			
	②전화번호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사소 업체 장지	⑤사무실	⑥전화번호		
	⑦주소			
⑧사업장규모	대지 :	m^2	건물 :	m^2
<p>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5조제2 및 동법시행규칙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p>				
<p>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이 경우 본인 이 직접 신고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여권·국가기술자격수첩·자동 차운전면허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폐기장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건설기계폐기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30,000원

30300-33211민

210mm×297mm

1999. 8. 11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m^2

[별지 제34호의2서식]

(앞쪽)

30300-33711

1999. 8. 11 개정승인

210mm × 297mm

일반용지 68g/m²(재활용품)

[별지 제34호의3서식]

(앞쪽)

매매용건설기계매도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소유자	①성명(대표자)		②신고번호	
	③주 소	(전화 :)		
매수인	④성명(명칭)		⑤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⑥주 소	(전화 :)		
매도 (반환)된 건설기계	⑦건설기계명		⑧등록번호	
	⑨형 식		⑩연 식	
	⑪차대번호		⑫규 격	
⑬매도(반환)년월일		⑭매입금액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구비서류 1. 양도증명서(매매업자거래용) 사본 1부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30300-338111민
1999. 8. 11 개정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8g/m²(재활용품)

[별지 제35호 서식]

(앞쪽)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

연 번	건설기계의표시					매도자		매수자		매매 가격	수익및수수료		매매(알 선)일자	취급자	비고(계 서번호)
	건설 기계명	형식	제작 연도	차대 번호	상태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매매이 익금	알선수 수료			

30300-339111민

297mm × 210mm

1999. 8. 11 개정승인

인쇄용지(특급) 70g/m²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				사 진	
면허번호 :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자료구분			
④주소					
⑤국적					
⑥면허종류	⑦교부일자	⑧교부자성명	⑨면허종류	⑩교부일자	⑪교부자성명
불도우저			모우터그레이더		
5톤미만 불도우저			로울러		
굴삭기			지게차		
3톤미만 굴삭기			3톤미만 지게차		
로우더			아스팔트피니셔		
3톤미만 로우더			아스팔트믹싱플랜트		
5톤미만 로우더			공기압축기		
기증기			준설선		

30300-14511비

1999. 8. 11 개정승인

210mm × 297mm

인쇄용지(특급) 120g/m²

(뒤쪽)

변동사항					
일자	내용				확인자성명
적성검사			재교부		
일자	장소	확인자성명	일자	내용	확인자성명

[별지 제44호의2서식]

제 호				
건설기계처리명령서				
소유자 (점유자)	① 성명(명칭)		②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건설기 계	④ 등록번호		⑤ 차대번호	
	⑥ 기 종		⑦ 형 식	
	⑧ 방치된 장소			
	⑨ 보관된 장소			
명령사항		년 월 일까지 위 건설기계를 자진회수 또는 폐기조치 할 것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설기계의 자진처리를 명령하니 지정된 기한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30300-34211일

1999. 8. 11 개정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8g/m²(재활용품))

[별지 제44호의3서식]

* 제 호				
건설기계 폐기 요청서				
*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소유자	①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②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건설 기계	④등록번호		⑤형 식	
	⑥건설기계명		⑦원동기형식	
	⑧차대번호			
⑨말소등록대행여부	<input type="checkbox"/> 필요 <input type="checkbox"/> 불필요(소유자 직접 말소등록신청)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3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설기계의 폐기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건설기계등록증 2.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폐차요청일전 3일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합니다.) 1부. 다만, 건설기계폐기업자가 저당·압류 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3. 건설기계소유자의 인감증명서(건설기계소유자가 직접 폐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1부 4.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저당권설정 등록 또는 압류등록이 된 건설기계에 한합니다.) 1부				

※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건설기계폐기업소	처리기간	즉시
--------	----------	------	----

30300-3331111

1999. 8. 11 개정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8g/m²(재활용품)

[별지 제44호의4서식]

제 호 폐기대상건설기계인수증명서				
소유자	①성명(명칭)		②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건설 기계	④등록번호		⑤연 식	
	⑥기 종		⑦형 식	
	⑧차대번호		⑨원동기형식	
⑩폐기연수연월일	년 월 일			
⑪등록번호판 인수·폐기여부	<input type="checkbox"/> ()개 인수.IvPri하였음		<input type="checkbox"/> 인수하지 않았음	
⑫ 소유자의 말소등록 직접신청 여부	<input type="checkbox"/> 직접신청 <input type="checkbox"/> 폐기업자가 신청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3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기의뢰된 건설기계를 인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 인 란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폐기인수증명서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을 한 자 이외의 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폐기업자는 등록을 한 사업장내에서 이 증명서를 발급하되, 반드시 직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표처분을 받게 됩니다. 				

30300-33311민

1999. 8. 11 개정승인

210mm × 297mm

일반용지 68g/m²(재활용품))

[별지 제44호의5서식]

폐기인수증명서서식수불대장

30300-33911비

1999. 8. 11 개정승인

297mm×210mm

보존용지(2종) 70g/m²)

[별지 제44호의6서식]

폐기인수증명서 발급대장

30300-34011비

297mm×210mm

1999. 8. 11 개정승인

보존용지(2종) 70g/m²)

[별지 제44호의 7서식]

말소등록신청대행대장

30300-34011비

1999. 8. 11 개정승인

297mm × 210mm

보존용지(2종) 70g/m²)

[별지 제44호의8서식]

폐기 검수표

①성명		②건설기계명		③생산년도	
④소유자주소		⑤원동기형식			
⑥등록번호		⑦차대번호			

점검내용

부품명	유	무	부품명	유	무
1. 원동기			7. 연료장치		
2. 동력전달장치			8. 전기장치		
3. 주행장치 타이어 전·후 차축 액슬샤프트 트랙 슈 팀블러			9. 차체와 차대		
4. 조향장치			10. 작업장치(뒤쪽참조)		
5. 제동장치					
6. 완충장치			계근중량	kg	

30300-33611민

210m × 297mm

1999. 8. 11 개정승인

(일반용지 68g/m² 재활용품)

(뒤쪽)

기종	작업장치	기종	작업장치
1. 볼도우저	베토판 리퍼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5. 콘크리트 펌프	드럼 펌프
2. 굴삭기	붐		붐
3. 로우더	버킷	16. 아스팔트믹싱 플랜트	드라이어
4. 지게차			제량장치
5. 스크레이퍼	마스트		
6. 덤프트럭	굴삭볼		믹서
7. 기중기	적재함		집진기
8. 모우터그레이더	붐 블레이드 리닝기어	17. 아스팔트피니셔	파이더 스크리 탬퍼
	드럼	18. 아스팔트살포기	탱크
9. 로울러	유제탱크		살포장치
10. 노상안정기	믹서	19. 골재살포기	호퍼
11. 콘크리트벳칭 플랜트	저장탱크 제량장치	20. 쇄석기	스크린 쇄석장치
	스크리드	21. 공기압축기	압축기
12. 콘크리트피니셔	바이브레이터	22. 천공기	모터
13. 콘크리트살포기	블레이드	23. 항타 및 항발기	유압펌프